

[] 품종보호권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질권

이전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	-----	-----	------	----

등록권리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 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
----------------------------	---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귀하
국립수산과학원장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 제적등본)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품종보호권 이전: 5만3천원 (상속의 경우에는 1만4천원) 실시권 이전: 3만3천원(상속 의 경우에는 1만1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